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다64445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다6444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10. 10 선고 2002나1494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은행

대구 ○○구 ○○동2가

대표이사 김♣년

지배인 박△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전♡하, 최◆진

피고, 피상고인 신□◇◇기금

서울 ○○구 ○○동대표이사 이사장 이▼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수, 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10. 10. 선고 2002나14947 판결

판결선고 2003. 3.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성립된 신용보증계약은 특정된 1건의 채무에 대하여 건별로 보증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별보증이고, 이러한 개별보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실행된 최초의 대출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부담하되 시설자금대출이 분할되어 실행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대출관련서류에 분할대출실행이 예정되어 있고, 분할 대출의 기한이 최초로 실행된 대출의 기한과 같을 것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하였을 때는 피고기금의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은행이 소외회사로부터 보증원금 1,500,000,000원의 이 사건 신용보증서 1매를 교부받고 같은 날 금 1,000,000,000원과 금 500,000,000원의 대출을 동시에 실행한 것은 사실이나, 위 각 대출에 필요한 여신거래약정서와 대출지급표, 대출계좌 등록 및 조회표 등이 모두 별도로 작성되어 있고 또 그 대출기한 또한 상이한 이상, 이는 각각 별개의 대출이 실행된 것에 불과하여 그 중 대출계좌번호가 빠른 금 1,000,000,000원의 대출이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대출된 최초의 대출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위 각 대출이 피고기금의 신용보증약관이 규정하고 있는 분할대출의 요건(최초의 대출관련서류에 분할대출실행이 예정되어 있고, 분할대출의 기한이 최초로 실행된 대출의 기한과 같을 것)을 충족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은 금 1,000,000,000원의 대출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고 금 500,000,000원의 대출부분에 대하여는 신용보증약관 제2조를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신용보증약관의 해석 및 적용범위, 피고기금의 보증의사 및 보증채무 승인의사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서 성 대법관 이용우 주 심 대법관 배기원 대법관 박재윤